

+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



안내서 이용 안내

이 안내서는 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NFT와 관련한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NFT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작품 등의 저작물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저작권법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NFT 판매자·거래소·구매자·권리자별로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주요 사항을 서술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안내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아래의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판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 자료실에서 이 안내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상담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 1588-0190 / 저작권 보호 상담 www.kcopa.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 1800-5455 / 저작권 법률 상담 www.copyright.or.kr



이 저작물은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목차

I. NFT와 저작권

- 1. 핵심 용어설명 02
- 2. NFT 이해하기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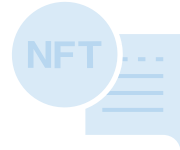
II.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유의사항

- 1. NFT 판매자 04
- 2. NFT 거래소 10
- 3. NFT 구매자 12
- 4. 권리자 14

III. 저작권 이해하기



I. NFT와 저작권



NFT(Non-Fungible Token)라는 새로운 개념은 등장과 동시에 인터넷 세상에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유명 현대 미술 작가뱅크시의 작품이 1만 조각으로 나뉘어 NFT로 발행되고 판매되는가 하면 작품을 촬영한 사진을 NFT로 만들고 원작품은 소각해버리는 작가도 나왔습니다. 실제 작품뿐 아니라 디지털 아트 등도 NFT와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복사·붙여넣기가 가능해 원본의 소장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던 디지털 파일에 구분할 수 있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매겨지고, 블록체인 기술이 거래내용의 위·변조 방지를 보장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NFT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완전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예컨대 가상자산의 재산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와 일대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기술에만 주목해 이 점을 간과하고 NFT를 무단 발행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국내 거장 화가들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여 경매를 추진하려다 저작권을 가진 유족 측의 항의로 중단된 일이 있었고, 외국에서는 자신의 허락 없이 NFT가 발행되었다는 작가의 삭제 요구로 이미 판매된 NFT가 사라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작품을 NFT로 발행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권리를 규율하는 저작권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림을 구매하여 방에 걸어 놓는다고 해서 그 그림의 저작자가 나로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이, 소장자 마음대로 작품을 NFT로 발행하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저작물의 NFT 발행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가 저작물의 NFT를 발행할 수 있는지, NFT를 발행하고 판매할 때는 어떤 저작권 이슈에 유의해야 하는지, 저작물의 NFT를 구매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매자·거래소·구매자·권리자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NFT가 저작물의 가치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했다면, 그 가치를 처음 만들어낸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1 핵심 용어 설명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소설, 음악, 사진, 영상, 회화, 논문, 강연, 시나리오 등)을 말합니다.
-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저작자에게만 귀속되며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며,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구분	화가, 작가, 작사가, 작곡자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인격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인접권자 중 실연자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가짐	
재산권	저작물 이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 복제권, 전송권, 보상청구권 등

-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이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보호됩니다.
 - ※ 등록해야 권리가 생기는(방식주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 **저작권의 법적 성질**
 -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가능(저작권법 제45조 제1항)합니다.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 가능(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합니다.

2 NFT 이해하기

1) NFT란?

* 현재 NFT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며 이 안내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사용하였습니다.

◆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토큰으로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 NFT는 ①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② 속성 정보(Metadata: NFT로 나타내고자 하는 자산 정보) ③ 디지털 저작물 데이터*(Metadata에 링크 형태로 포함**) 등으로 구성됩니다.
- NFT를 통해 디지털 저작물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고, 누구나 NFT 보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품 인증서'로 불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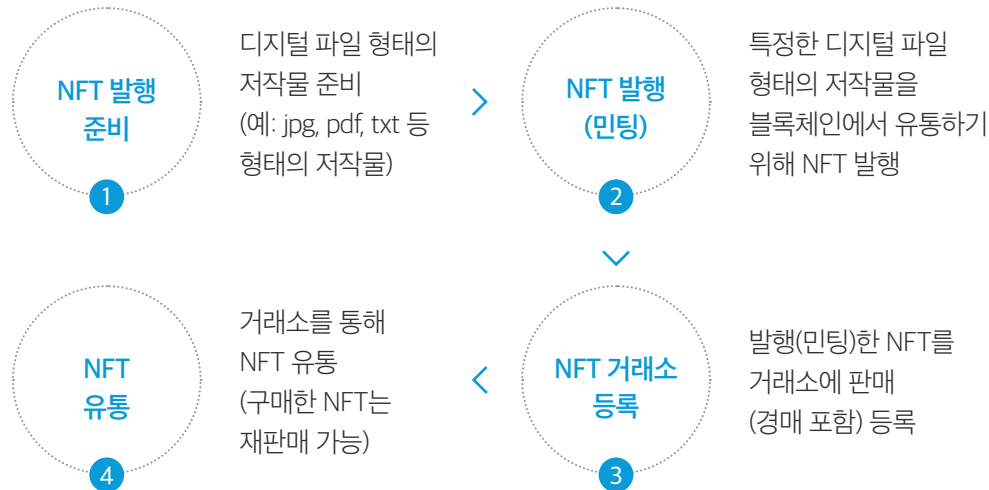
* NFT와 연결되는 대상은 저작물이 아닌 것도 있으나, 이 안내서는 저작물에 한정하여 서술합니다.

** NFT는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이 직접 저장되는 경우보다는 링크 형식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NFT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속성정보만을 포함하고 저작물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NFT 그 자체를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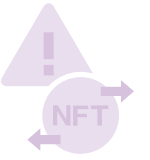
◆ NFT의 발행(Minting, 민팅)

- NFT 발행은 토큰에 대체 불가능한 정보를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 이 안내서에서의 '발행'은 저작권법상의 복제·배포를 의미하는 발행과는 구분됩니다.

2) NFT 제작부터 구매까지 단계(예시)



II.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시 유의사항



1 NFT 판매자

① 주요사항

-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저작권자(저작권재산권자와 저작인접권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기재, 이하 동일)로부터 이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음반(음원)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자는 저작재산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도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자라 할지라도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어야 이를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하게 되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판매자는 거래 전 거래소에 명시된 약관을 확인하여 판매하는 저작물의 권리관계에 미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판매자가 권리자인 경우

■ 저작자가 직접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 ◆ 저작자는 자유롭게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쉽게 권리자를 추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위해 NFT를 판매하기 전 NFT에 연결된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NFT로 판매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저작권뿐만 아니라 초상권 등 다른 권리도 내포된 경우 다른 권리자의 동의도 받아야 NFT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판매하는 경우

- ◆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을 NFT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창작한 자(저작자)는 아니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저작재산권자가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NFT와 연결된 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 NFT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 저작물 원본의 복제행위가 발생하며 이를 별도의 서버에 업로드(전송)하고 구매자 등에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복제권 및 전송권이 필요합니다.
 - 권리 귀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NFT 판매 전 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 사항을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할 수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자는 NFT 판매 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목 등을 변경하여 판매하려면 변경 사항에 대해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을 때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NFT로 발행해도 되나요?

A. 저작자가 아닌 저작재산권자가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형했다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변형물이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는데 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지 못한 자가 변형행위를 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와 양수인 사이에 저작재산권 포괄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저작권법 제45조 제2항)되기 때문에 반드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수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NFT를 발행할 때 메타데이터의 저작물 정보(제목, 저작자 실명 등)를 발행자가 마음에 드는 정보로 기재해도 되나요?

A. 저작물을 NFT로 발행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NFT 발행 시 저작물 제호, 저작자 실명 또는 이명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 창작시 타인에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자에게만 귀속되어 타인에게 양도나 승계할 수 없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저작재산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습니다.

3 공동저작물 저작자(및 저작권자인 경우) 중 한 명이 판매하는 경우

- ◆ 공동저작물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합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므로, 공동저작물 저작자 중 한 명이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 콘텐츠를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가 공동저작물인 경우 이를 NFT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 또한, 권리 귀속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NFT 판매 전 NFT와 연결된 저작물의 권리 관계를 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 공동저작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예: 만화를 그림 작가와 스토리작가가 같이 작업하여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저작권법 제48조)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4 저작권접권자도 있는 경우

- 음반(음원)과 같은 저작권접물의 권리자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권접권자도 있으므로, 이를 NFT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리자가 전부 판매자가 되거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시]

○○노래 음반을 틀어놓고 A가 부르는 것을 C가 촬영했는데, 그 촬영 영상을 B가 NFT로 발행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권리자들

- ✓ ○○노래의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등(저작권자)
- ✓ 영상 촬영자(저작권자)
- ✓ ○○노래의 음반제작자(저작권접권자)
- ✓ ○○노래를 부른 실연자 A와 ○○노래의 가수 또는 연주자(저작권접권자)

- 저작자와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전 NFT와 연결된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A 가수의 음악 MP3 파일을 구매한 것은 MP3 파일의 저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는 것으로 이를 NFT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판매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인 경우

1 (NFT 발행·판매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 판매) 저작물(저작권접물 포함)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인 경우

- 판매자는 저작물을 NFT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권리자가 이용허락한 범위 내에서 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이용허락은 ① NFT의 발행과 판매 ② NFT 판매 과정에서 구체적인 저작물 이용 범위(예: 전송, 복제) ③ 구체적인 NFT 판매 조건(구매자가 얻게 되는 권리 또는 이용허락 범위)에 대한 이용허락을 말합니다.
 - 또한, 판매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Q.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자도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A.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이용허락'은 ① 판매자(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물을 NFT 발행하여 판매한다는 것 ②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해당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 할 수 있다는 것 ③ 판매자의 구체적인 판매 조건(NFT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얻게 되는 권리 또는 이용허락 범위에 대해 저작재산권자가 설정한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NFT 구매 후 재판매) NFT를 구매한 자가 이를 재판매하는 경우

- NFT 구매자가 NFT 구매로 최초 판매자(권리자)로부터 얻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를 NFT 재판매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법 제46조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다만, ① 최초 판매자(권리자)가 NFT를 판매하면서 '해당 NFT의 구매로 얻을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는 이를 재구매한 자에게 이전됨'을 밝힌 경우이거나 ② 재판매된 NFT의 구매자가 권리자로부터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A는 NFT를 구매할 때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의 온라인 전시(전송)를 이용 허락받았습니다. A가 NFT를 재판매할 때 권리자가 허락한 온라인 전시(전송) 권한도 NFT를 재구매한 자에게 이전되나요?

A. 저작권법 제46조(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 제88조)는 권리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FT를 재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NFT를 재구매한 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① 최초 판매자(권리자)가 NFT를 판매하면서 '해당 NFT의 구매로 얻을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가 추후 NFT를 재판매될 때도 계속 이전됨'을 밝힌 경우 ② NFT를 재구매한 자가 권리자에게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NFT를 재구매한 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권리자)는 NFT를 최초 판매할 때는 NFT를 다시 양수 받은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 조건에 해당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3) 판매자가 자유 이용 저작물(Public Domain)을 판매하는 경우

- 자유 이용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
 - 다만, 자유 이용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남아있거나 이용조건에 제한이 있는 기존 저작물 등은 권리자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NFT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A.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고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고의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NFT 거래소

① 주요사항

- NFT 거래소는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약관 등을 통해 사전고지하고 그 주요 내용을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 NFT 거래소는 권리자, 판매자 및 구매자가 NFT 거래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 등)를 공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 NFT 거래소는 안전한 NFT 콘텐츠 거래를 위해 Contract 주소, TokenID, 블록체인 종류, 에디션 번호(총발행량 포함)를 게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판매자에 대한 안내사항

- 거래소는 판매자가 NFT 거래 과정에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판매과정에서 판매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거래소는 판매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한 주요 내용(창작일, 창작자, 판매 조건, 총발행량 등)을 표시하도록 안내하여 구매자가 NFT 구매로 얻을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소는 판매자가 판매 게시글에 저작권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고자 할 때 이를 서비스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거래소가 판매자에게 안내하는 게시글

- ✓ 판매자는 NFT로 발행하려는 콘텐츠(미술품 등)에 대한 저작권자인가요?
- ✓ 판매자가 콘텐츠(미술품 등)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저작권자로부터 콘텐츠를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나요?
- ✓ 판매자가 저작재산권자라도 저작자가 별도로 있다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있으므로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했나요?
- ✓ 음반(음원) 등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때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얻었나요?
- ✓ 판매자는 NFT 구매자가 저작물에 대해 취득하는 권리 또는 저작물 이용 범위를 명확하게 안내했나요?
- ✓ 구매한 NFT를 재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는 NFT 구매로 얻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리가 NFT 재구매자에게 이전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준수했나요?
- ✓ 저작물 원본 파일이 NFT 거래소가 관리하지 않는 외부저장소(IPFS 등)에 저장되었을 때 판매자는 해당 NFT가 유통되는 동안 해당 파일이 삭제되지 않도록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나요?

- 판매자가 재판매자일 때 거래소는 ① 최초 판매자(권리자)가 설정한 저작물 이용조건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지 ② 이전이 된다면 최초 판매자가 설정한 저작물 이용조건이 무엇인지 ③ 이전되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동의받아야 함을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재판매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매자에 대한 안내사항

- 거래소는 구매자에게 NFT 구매 전에 구매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주요 내용(저작물의 종류, 저작자, 판매 조건 등)과 해당 판매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거래소는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설정한 판매 조건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넘어서 이용할 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거래소가 구매자에게 안내하는 게시물

- ✓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NFT 콘텐츠의 주요 내용(창작자, 창작일, 판매 조건, 총발행량 등)을 확인하였나요?
- ✓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NFT의 원본 저작물이 NFT 거래소가 관리하지 않는 외부저장소에 저장되었을 때 원본 저작물의 존재를 확인했나요?
- ✓ 구매자는 NFT 구매로 얻게 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인했나요?

3) 거래소에 대한 권장 사항

- 거래소는 판매자가 판매 게시물에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저작권 등록증, 등록번호, 이용허락서, SNS 연동 등)를 게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 거래소는 판매되는 NFT를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Contract 주소, TokenID, 블록체인 종류, 에디션 번호(총발행량 포함) 등 게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소가 판매자 편의를 위해 NFT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소는 메타데이터에 저작자, 저작물 명칭, 원본 파일(링크)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에서 허위의 NFT, 저작권을 침해하여 연결된 NFT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NFT 거래소가 직접 NFT를 발행 및 판매할 때는 NFT 거래소는 '판매자'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구매자

① 주요사항

- NFT 구매자는 NFT 거래소의 약관, 구매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주요 내용(거래 조건 등)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권장합니다.
- NFT 구매자는 판매자가 설정한 저작물 이용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판매되는 NFT를 구매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도로 이용허락한 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 구매자는 구매 전 NFT 판매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구매자는 판매자가 게시한 정보(이용허락서, 저작권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다른 수단 등을 통해 판매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위원회 등록시스템(www.cros.or.kr)에서 조회

2) 판매 대상의 확인

- 구매자는 Contract 주소, TokenID, 블록체인 종류, 에디션 번호(총발행량 포함)를 통해 구체적인 판매 대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히 메타데이터 또는 NFT에 연결된 저작물이 삭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판매 조건의 확인

- 구매자는 판매자가 게시한 사항 및 약관을 확인하여 NFT 구매로 본인이 취득하게 되는 권리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매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 취득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명시한 경우) 구매자는 그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판매 조건을 게시하지 않았으나, 약관에 구매자가 취득하게 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약관이 규정된 거래소에서의 판매는 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구매자는 약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판매 조건을 게시하지도 않고, 약관에 판매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NFT를 구매했어도 해당 저작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고 이용할 수도 없으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구매한 NFT에 연결된 저작물을 활용해 온라인 전시(전송) 또는 홍보(인쇄물 등 제작)를 해도 되나요?

A. NFT 구매자는 판매자가 정한 판매 조건(NFT 구매 시 NFT에 연결된 저작물에 대해 구매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을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구매 후 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조건은 NFT 판매 게시글 또는 판매자가 별도로 개설한 사이트에 게시한 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소가 판매자를 대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약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 조건에 '저작물의 온라인 전시(전송) 또는 영리 목적 복제(홍보를 위해 인쇄물 제작) 이용 가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매자는 이를 전시 또는 홍보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 NFT 판매자(권리자)가 NFT를 판매하며 NFT에 연결된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을 USB 등 저장매체에 담아 NFT 구매자에게 교부한 경우, 구매자는 해당 디지털 사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판매자가 NFT 판매와 함께 NFT에 연결된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을 구매자에게 별도로 교부한 경우, 구매자는 NFT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없으며 판매자의 판매 조건(이용허락) 범위에서 해당 디지털 사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재판매시 유의사항

- 구매자는 해당 NFT를 재판매하고자 할 때 ① 최초 판매자(저작권자)가 설정한 저작물 이용 조건이 재구매자에게 이전되는지 ② 만약 이전이 되면 최초 판매자가 설정한 저작물 이용 조건이 무엇인지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4 권리자

① 주요사항

- 권리자가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려면 구매자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인접)물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되어 거래소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인접)물을 무단으로 NFT로 발행하여 판매한 자에게 민사상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권리자가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 권리자가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려면 구매자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저작(인접)물을 어떤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자는 NFT가 거래되는 동안 NFT에 연결된 저작물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판매자편' 참고

2) 타인이 무단으로 권리자의 저작(인접)물을 이용하여 NFT를 발행 및 판매하는 경우

- **(이의 신청)**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인접)물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되어 거래소에 판매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거래소에 판매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 정지 청구 및 손해배상)**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 등이 ① NFT 거래소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판매되고 있거나 ② 자신이 이용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고 있다면 침해자에게 침해행위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침해행위로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 또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이며,
 - 사전에 권리자가 권리 등록을 했다면 권리자가 손해배상 범위를 입증하지 않아도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형사 고소 및 처벌)**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되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저작권자는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고소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비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 기간 제한은 없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권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조정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조정제도란 저작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비용은 1~10만원에 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사건이 종결됩니다.
 - 조정은 권리자뿐만 아니라 침해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조정부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직권조정 결정을 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 **오프라인 조정 신청(직접 방문 또는 우편)**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 ▶ **온라인 신청**
누리집(<https://www.copyright.or.kr>) 접속 후, [업무포털]-[분쟁조정]-[제도안내]-[신청안내]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III. 저작권 이해하기



1 저작권

1) 저작물이란?

-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합니다.

저작물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헌법·법률·조약·조례 및 규칙 - 법원의 판결·결정 및 심판 등에 따른 의결·결정 등

2) 저작권이란?

- ◆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로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제목, 형식 및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 **저작권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

복제권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방송권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
공중 송신권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디지털 음성 송신권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전송은 제외)
전시권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할 수 있는 권리
배포권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권재산권자의 허락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을 때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여권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 대여권은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적용되므로, 도서나 미술품 등을 대여하는 행위에는 대여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저작인격권과 저작권재산권의 비교**

저작권재산권은 양도나 상속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저작자에게만 귀속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권리의 발생을 위하여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무방식주의).

• **저작권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3) 저작권의 귀속

• **원칙: 창작자주의**

- 저작물을 창작한 자, 즉 직접 표현·작성 행위를 한 사람이 저작자로서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창작물로서, 여러 명의 창작자가 저작권을 공동으로 가집니다.

• **예외: 업무상저작물**

- 예외적으로,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은 창작을 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단체 등의 사용자가 저작자가 되어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①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② 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③ 그 업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작성하여 ④ 사용자의 명의로 공표하면(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공표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⑤ 근무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권리를 갖게 됩니다.

4)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과 인접한 또는 이에 관련된 권리로, 직접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의 해석이나 전달에 도움을 준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됩니다.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실연자¹ 인격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음반제작자² 재산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작성권	재산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송권 - 방송사업자의 실연에 대한 보상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에 대한 보상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에 대한 보상	방송사업자³ 재산권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공연권

¹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의 권리: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연을 하는 자(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자를 포함)가 그 실연에 대해 가지는 권리

²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가 음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³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 방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저작권과 소유권

- 소유권은 민법상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며, 무체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저작물이 담긴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도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책을 구매한다고 할 때, 책이라는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만, 그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	권리 성격	권리행사 대상(예시)
소유권	배타적 독점권	유체물(소설책 그 자체) 등
저작권	배타적 독점권	무체물(소설에 담긴 작가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3 저작권 이용 방법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복제권, 전송권 등)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이 없다면 양도사항에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재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2) 저작인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도 저작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권자가 이용허락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실연, 음반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유형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인가?		
	저작물이 아닌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 어문, 미술, 음악, 영상 등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7조, 제39조 등	(저작권법) 제4조, 제10조	
이용목적 및 방법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인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및 공정이용에 해당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예: 기증저작물 등)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이용 (복제, 전송, 공연 등)	
	(저작권법) 제23조~ 제37조 등	(저작권법) 제11조~제22조 등	
이용허락	저작권자의 확인 이용허락(계약, 동의 등)		
	(저작권법) 제45조 및 제46조 등		
이용	이용 (타법 위반 여부 확인 등)	이용 조건 및 의무 사항 준수 후 이용 (예: 출처표시 등)	허락받은 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용

4 저작권 등록의 효과

- 추정력
 -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와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면 해당 등록 사실에 대해 법적인 추정력을 받습니다.
 - ※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창작연월일을 등록할 때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대항력
 -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을 등록하면 등록된 사실에 대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법정손해배상
 -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권리자가 손해배상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참고]

- ▶ 오프라인 조정 신청(직접 방문 또는 우편)
 - (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총의로 19, 1층 한국저작권위원회
- ▶ 온라인 신청
 - 누리집(<https://www.cros.or.kr>) 접속 후, [등록신청] 메뉴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을 클릭하여 신청

5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제37조(출처의 명시)

6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

1) 형사적 책임

1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호(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3 저작자를 허위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민사적 책임

1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2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저작권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손해액을 추정 하는 규정 및 법정손해배상액에 대한 규정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과실 등의 요건이 추정됩니다.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발행	2022년 6월
기획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집필 (가나다 순)	박경신 겸임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진해 변호사(한국저작권보호원) 임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전재림 책임연구원(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처	한국저작권보호원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1602) 4·9·10층
연락처	한국저작권보호원 1588-0190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
누리집	한국저작권보호원 www.kcopa.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디자인	그래픽오션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